

# 원자력과 사회 소통상 운영 규정

제 정 2014. 05. 02

개 정 2014. 12. 05

개 정 2015. 03. 13

개 정 2017. 08. 31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,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국민 소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원자력과 사회 또는 국민과의 소통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고자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(이하 학회) 포상 규정 제 2조 제3항에 의거하여, 제정한 특별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특별상의 명칭은 원자력과 사회 소통상(이하 소통상)이라 한다.

제 3 조 (포상 대상) 소통상은 원자력 관련 대국민 소통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. 매년 1인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며, 이 상의 기수상자 또는 기수상 단체는 포상 대상이 될 수 없다.

제 4 조 (포상 내용) 소통상은 포상 이유를 명기한 상패와 부상(상금 300만원)으로 시상한다.

제 5 조 (재원) 소통상은 학회 재원으로 운영한다.

제 6 조 (시상 시기 및 장소) 소통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(추계학술발표회장)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조 (선정 절차 등) 소통상의 수상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 선정한다. 다만, 재원이 없거나, 추천이 없거나 심사 또는 심의.확정 과정에서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수상후보자 추천 (매년 6월중, 추천자격: 임원 1인 또는 정회원 3인 이상)
2. 포상 및 장학위원회(이하 위원회)의 심사 및 3인 이내의 최종 수상 후보자 선정
3. 이사회 심의 및 확정

제 8 조 (수상 후보자 추천 서류) 추천자는 추천서와 함께 후보자의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후보자 심사 등) 위원회는 후보자 심사 시 업적의 우수성과 아울러 제 1 조 목적에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 평가에 필요한 세부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.

제 10 조 (이사회 심의 및 확정) 이사회에서는 추천 및 심사과정의 적절성과 제9 조 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최종 수상대상자에 대한 적격성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.

제 11 조 (준용 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 포상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